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51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제221595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2
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신설 등)	5

I.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제221595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9.

다. 회 부 일 : 2026. 1.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중요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지만, 관련 심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나, 국민의 주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또한, 주거정책심의 위원과 그의 일가가 안전과 관련된 지역에 소재하거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사유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 8조의2 신설 등).

3. 검토의견

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7. (생략) ② ~ ⑤ (생략)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회의록의 작성·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 ----- ----- -----조 및 제8조의 2에서-----.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심의서로 같음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⑧ ----- -----및 공개 등에-----.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현행법 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¹⁾(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거종합계

1) 「주거기본법」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회의 수립 및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록에 대한 공개 의무는 없음.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 서면심의서로 회의록을 갈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주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한국은행법」 상 금융통화위원회²⁾가 결정하는 통화신용정책의 경우 위원의 정보는 익명으로 하여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국민들이 회의 과정에서의 발언 요지 등을 직

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한국은행법」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記名)하고 날인(捺印) 또는 서명(署名)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운영규정」

제13조(의사록의 공개 등) ① 의장은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의 내용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의 시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접 확인할 수 있어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현재도 주요 논의, 심의 결과 등 핵심 사항에 대하여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충실히 정보를 제공 중이며,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나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되므로 발언 요지 등이 공개될 경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등을 위해 회의록 공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을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생략)	제25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안 제8조의2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제척 사유 및 기피, 회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5조제2항은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³⁾에서 既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함과 아울러 안 제8조의2제1항제6호의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을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3)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경우”를 제척 사유에 추가하고, 제척 사유 미회피에 대한 벌칙 규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⁴⁾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정책 결정에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현행법 시행령 상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해촉⁵⁾할 수 있지만 그 외 추가적인 조치 방안이 없음을 고려하여, 제척 사유에 대한 회피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8조의2제1항제6호의 제척 사유의 경우 주거종합계획 수립,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광범위한 지역이 포함되는 심의 안건이 상정될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많아져 위원회의 개의⁶⁾가 제한될 수

4)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7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주거기본법」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있는 측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심의 안건의 유형과 제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척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⁷⁾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낮은 측면이 있으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피 미이행과 관련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관련 입법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로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7) 「주거기본법」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회의록의 작성·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